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다205035 판결 [보증채무금]

재판경과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다20503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11 선고 2019나3674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30 선고 2018가소2611482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중소기업은행

피고, 피상고인서울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강

담당변호사 유영상, 문현성, 백준기, 오정경

판결 선고 2020. 5. 14.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11. 선고 2019나3674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이므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고할 수 있는데, 상고이유의 주장은 그 어느 것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이기택

대법관권순일

대법관박정화

주심대법관김선수